

제7차 금융위원회 의사록

2016. 4. 14.

금 융 위 원 회

1. 일 시 : 2016년 4월 14일(수) 14:00~14:20

2. 장 소 : 금융위원회 회의실

3. 출석위원

임 종 룡 위 원 장

정 은 보 부위원장

고 승 범 위 원

김 학 균 위 원

진 응 섭 위 원

장 병 화 위 원

곽 범 국 위 원

정 순 섭 위 원

4. 회의경과

가. 개회선언

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, 개회를 선언함

1) 2016년도 제6차 금융위 회의록 보고

- 2016년도 제6차 금융위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

2) 의결안건 심의

- 의결안건 제65호 『○○○의 ○○○ 대주주 변경승인 위반 관련 조치안』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⇒ 원안 의결함

- 의결안건 제66호 『○○○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』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⇒ 원안 의결함

- 의결안건 제67호 『케이알선물(주)의 투자매매업 전부의 폐지 승인안』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⇒ 원안 의결함

- 의결안건 제68호 『한국거래소 정관 일부 변경 승인안』 , 제69호 『한국예탁결제원 정관 일부 변경 승인안』 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

⇒ 각각 원안 의결함

- 의결안건 제70호 『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』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

⇒ 원안 의결함

- 의결안건 제71호 『유안타상업은행의 한신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안』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

⇒ 원안 의결함

3) 보고안건 심의

- 보고안건 제19호 『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』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

⇒ 원안 접수함

- 보고안건 제20호 『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』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

⇒ 원안 접수함

- 보고안건 제21호 『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』 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이 내용을 설명함

- 금융규제개혁 관련 후속조치로서 은행채 발행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상환기간 제한을 삭제함에 따라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, 조달비용 절감, 금융소비자의 편익 향상 등 긍정적 측면이 있음.

지준정책 및 단기자금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은행의 입장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의견을 전달하겠음.

-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 및 상환기간제한 폐지는 금융회사의 은행 자금조달 다양화 요청에 따른 기발표사항(2014.7월)으로 한국은행 입장 관련 부분은 입법예고기간 중 추가 협의바람.

⇒ 원안 접수함

- 보고안건 제22호 『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』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

⇒ 원안 접수함

- 보고안건 제23호 『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』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

⇒ 원안 접수함

- 보고안건 제24호 『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』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

⇒ 원안 접수함

- 보고안건 제25호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』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신용정보팀장이 내용을 설명함

⇒ 원안 접수함

나. 폐회선언

위원장이 2016년도 금융위원회 제7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